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according to the Manpower Allocation under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강 봉 속 (Bong-Suk Ka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igger a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in school library resources. To this end, differences and correlations between other resources invested in the school library and output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manpower alloc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books, the budget, the number of seats, the number of borrowed materials, and the number of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manpower alloca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subjects in which the ratio of students, the lowest grade in the achievement evaluation, was more than 1/2.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ffing according to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by region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allocation rat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rder of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unit. Depending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net asset per household as well as differences in school library manpower assignment rates. In contrast, the large cities with relatively affluent school library manpower assignment rates were found to be higher. Therefore, based on the survey contents of this study, it was emphasized that the manpower stipulated in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should be deployed as soon as possible even in relatively poor areas to bridg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키워드: 교육격차, 교육소외, 교육불평등,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Education Gap, Education Exclusion, Educational Inequality,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 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표한 교육 공공데이터 학술대회(2022. 6. 30)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와 학교도서관 현황에 활용한 데이터와 동일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교육격차 주제로 연구 문제를 재설정하고 관련 이론과 분석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논문접수일자: 2023년 7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7월 3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231-248,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3.231>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헌법은 누구나 차별없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누구나 지식, 정보, 문화 복지를 향유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법』 상에 설립과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관종의 도서관 중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가장 밀접하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대한 무료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을 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도서관과 함께 학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에 학교도서관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기간동안 어린이, 청소년이 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며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는 거주 지역 등의 교육 여건에 관계 없이 균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18년,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상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기준이 교당 1명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은 전체 학교 수의 5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균질하지 않게 제공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

여 더욱 면밀하게 고찰해야 할 부분은 학교도서관의 인력 미배치가 교육격차의 그늘이 드리운 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의 배치가 지역 간 균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서비스(Edu Data Service System, 이하 EDSS)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학교도서관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지역 간 학교도서관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이 균질한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하 KOSIS)에 나타난 지역별 소득 통계와 연결하여 지역간 격차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교차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 간 교육격차와 같은 선상에서 지역 간 학교도서관 서비스조차 격차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별 학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 간 교육격차 없는 학교도서관 교육만큼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지역 간 격차 없이 평등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누리는 데 기여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해 세운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RQ 1.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은 미배치된 학교도서관보다 인력 자원 외에도 전반적으로 풍부한 자원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RQ 2.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전반적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과 전반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인력

『도서관법』 제40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업무와 역할을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포함해서 6가지로 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는 학교도서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도서관법 제4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업무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개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의체를 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학교도서관은 풍부한 정보자원에 기반하여 학생들에게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유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따라 학부모,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로 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을 임의 조항으로 두었던 것을 2018년에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2월 개정된 법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의무 배치와 관련한 조항이 2018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행령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1,500명 당 1명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을 교당 1명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그밖에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독서문화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학교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제10조에 두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상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9조에 두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배치 근거를 두고 있다.

2.2 지역 간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에 발생하는 교육 소외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의미한다(박혜경, 2017, 97).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정상적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 교육복지수준을 높이고자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계층, 지역, 집단 간에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 유형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은 다양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김인희, 2010, 139-140).

다양한 유형의 교육격차 중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교육격차는 지역 간 교육격차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산어촌 지역에서 겪는 지역 간 교육격차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간 교육격차는 계층 간 교육격차, 집단 간 교육격차와도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정책 수요가 높은 지역이 농산어촌, 도서벽지, 도시저소득지역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교육복지정책 중에서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영역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최신 정책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2022

년 10월,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 중장기 계획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국가, 지역, 학교가 함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협력 수업, 에듀테크 활용 등으로 수업 방안을 다각화하는 노력과 함께 기초학력 다중안전망을 완성하는 교실, 학교, 학교밖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능,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단위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차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최저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을 지나면서 학생 간 학력격차, 교육격차는 더욱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교육격차와 관련된 다른 정책으로는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 등이 있다. 최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

<표 1> 교육복지정책의 대상

문제 유형	정책 대상	
교육기회의 접근 제한	저소득층, 저학력성인, 장애인, 건강장애자, 북한이탈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부적응	학력 부진	기초학력미달학생
	학교 부적응	정서·심리·문화적 부적응, 학교폭력·비행, 학업중단,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학생, 귀국학생,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환경 부적응	교육시설, 주변환경, 학교보건위생·안전, 학교의 문화·풍토
교육기회 불충분	수업 결손, 장기결석(건강장애자 등), 수업일수 부족, 교육자원 부족(인적, 물적)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교육차별)	계층 간	저소득층(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간	농산어촌, 도서벽지, 도시저소득지역
	집단 간	성별, 피부색,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등

〈표 2〉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및 교직원 배치 조항 설치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 및 개정	작은 학교 기준	교직원배치
서울	미설치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7. 14. 제정	학생 과밀지역의 과대학교 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도심형 소규모 학교	
대구	미설치			
인천	미설치			
광주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30. 타법개정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2022. 4. 15. 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	제8조
울산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20. 12. 24. 제정	구(區)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 군(郡)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인 학교	제8조, 제9조
세종	미설치			
경기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4. 10. 일부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제8조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 일부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제8조
충북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3. 17. 타법개정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제11조, 제13조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8. 제정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충남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21. 9. 30. 일부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제8조
전북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31. 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제7조, 제8조
전남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2018. 3. 29. 제정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제10조, 제11조
경북	미설치			
경남	경상남도작은학교지원에관한조례	2022. 7. 7. 일부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제8조, 제9조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2021. 9. 27. 제정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2021. 7. 5. 제정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제주	미설치 (폐지 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3. 타법폐지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제10조, 제11조

한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재정비되고 있다. 서울, 인천,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 외에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단위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등 작은 학교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학생 유입 방안 등의 내용과 함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직원 배

〈표 3〉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교직원 배치 및 우대 관련 내용

조항	내용
제8조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업무 경감 지원 등에 있어 우대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치와 우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작은 학교에 소외되지 않고 교직원 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도 사서교사와 같은 우수한 자원이 투입되어서 지역 여건을 넘어서 균질한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3 선행연구

격차와 관련된 도서관 분야 연구를 관중별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른 관중에 비하여 공공도서관과 격차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희운(2022)은 공공도서관을 지역 문화시설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와 함께 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 수와 사서 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 수와 같은 투입 지표, 그리고 자료실 이용자 수, 대출책 수, 강좌 참가 수와 같은 산출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조재인(2020)은 지니계수와 파레토 비율을

활용한 학술정보공유 기여에 대한 대학도서관 격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술정보 공유 협력 사업에서 상위 20%의 대학도서관이 81.2% 이상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정보 기여에 대한 격차는 평균 0.78로 매우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재계산한 지니계수도 일부 사업에서만 균등한 쪽으로 조금 조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학의 형태에 있어 전문대학도서관 간의 격차가 4년제 대학도서관보다 극심하였으며, 국립대학도서관보다 사립대학도서관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기여 수준을 보이는 대규모 도서관이 존재하였으며, 도서관의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 수준을 보이는 도서관도 분포함을 증명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격차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박일종과 유경종(2009)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관중을 대상으로 지역간 도서관 정보격차 및 상관관계를 연구한 내용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들은 한국도서관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주요지표인 인구 수, 건물면적, 소장자료 수, 직원 수, 운영예산, 이용자 수, 대출책 수를 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경기수도권, 강원충청권, 부산영남권, 광주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통계적으로 변인 상호간에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평균분석과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관중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별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4개 권역의 정보격차에서는 경기수도권으로 도서관 정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해 격차와 연계하여 분석한 최신의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학교도서관의 대표적 자원 투입지표인 법정 인력 배치 여부를 중심으로 장서 수, 좌석 수 등 다른 투입지표와 연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출자료수로 나타나는 대표적 산출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간 학교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 격차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DS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서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학교별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학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DSS는 교육 유관기관 등에 축적되어 있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가공하여 모집단으로부터 70% 표본을 층화추출하여,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연구자나 기관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교는 EDSS에서 제공하는 70% 층화 추출된 학교 중에서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결측값 없이 제시된 중등학교로 한정하였다. 또한 해당 학교의 총개황과 학교도서관 현황, 학교별 교직원 자료 모두가 누락없이 제시된 학교만으로 한정하였다.

최근 3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 상황의 학교도서관 현황 자료는 학교도서관의 제한적 운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의 학교도서관 현황이 조사된 2020년의 자료까지 최근 3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2018년 2,598개교, 2019년 2,637개교, 2020년 2,635개교이다. 연도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학교 수를 구분해 보면, 2018년은 배치된 학교가 975개교로 37.5%,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1,623개교로 62.5%이다. 2019년의 경우 배치된 학교가 1,098개교로 41.6%,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1,539개교로 58.4%이다. 또한 2020년은 배치된 경우가 1,201개교로 45.6%, 미배치된 경우가 1,434개교로 54.4%이다. 이 데이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획득하였으며, 데이터 요청 시 독려가 있어 발표한 교육 공공데이터 학술대회(2022. 6. 30)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와 학교도서관 현황' 발표에 활용한 데이터와

〈표 4〉 조사대상 학교 학교급 및 인력 배치 구분

연도	학교급	조사대상 학교 수		연도	인력 배치	조사대상 학교 수	
		학교 수	비율 (%)			인력 수	비율 (%)
2018	고등학교	400(15.4%)	2,598(33.0%)	2018	배치	975(37.5%)	2,598(100.0%)
	중학교	2,198(84.6%)			미배치	1,623(62.5%)	
2019	고등학교	428(16.2%)	2,637(33.5%)	2019	배치	1,098(41.6%)	2,637(100.0%)
	중학교	2,209(83.8%)			미배치	1,539(58.4%)	
2020	고등학교	424(16.1%)	2,635(33.5%)	2020	배치	1,201(45.6%)	2,635(100.0%)
	중학교	2,211(83.9%)			미배치	1,434(54.4%)	

동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격차 주제로 연구 문제를 재설정하고 관련 이론과 분석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추가로 분석한 자료는 KOSIS에 나타난 지역별 소득 현황 통계 등이다. 이와 EDSS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연계하여 지역 특성별로 나타나는 가계 당 순자산 격차를 조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현황을 교차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 간 교육격차와 같은 선상에서 학교도서관 서비스조차 지역 간 격차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1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분석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장서 수를 비교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 상 규정 인력은 배

치된 경우보다 미배치인 경우의 비율이 일관되게 높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배치된 학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학교도서관의 평균 장서 수는 2018년 14,984권에서 2019년 15,145권, 2020년 15,314권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장서 수 평균이 17,595권,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장서 수 평균이 12,703권으로 비교되었다. 즉,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경우 학교도서관의 장서 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자료구입비의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별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평균은 2018년 7,908,534원에서 2019년 8,241,739원, 2020년 9,015,820원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평균이 10,521,484원,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평균이 6,873,191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표 5〉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별 장서 수 평균

연도	인력	장서 수 평균	
18	배치	17,423	14,984
	미배치	12,544	
19	배치	17,591	15,145
	미배치	12,699	
20	배치	17,738	15,314
	미배치	12,889	

인력	학교 수	장서 수 평균
배치	3,274(41.6%)	17,595
미배치	4,596(58.4%)	12,703

t=-40.054***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0.001)

〈표 6〉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별 자료구입비 평균

연도	인력	자료구입비 평균	
18	배치	9,832,624	7,908,534
	미배치	6,752,658	
19	배치	10,215,884	8,241,739
	미배치	6,833,285	
20	배치	11,360,108	9,015,820
	미배치	7,052,438	

인력	학교 수	자료구입비 평균
배치	3,274(41.6%)	10,521,484
미배치	4,596(58.4%)	6,873,191

t=-35.951***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0.001)

미한 차이를 강력하게 지니며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학교도서관 좌석 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별로 학교도서관의 좌석 수 평균은 2018년 53.9석에서 2019년 52.6석, 2020년 52.2석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

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좌석 수 평균이 62.0석,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좌석 수 평균이 46.4석으로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학교도서관 대출자료 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

〈표 7〉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별 좌석 수 평균

연도	인력	좌석 수 평균	
18	배치	64.0	53.9
	미배치	47.9	
19	배치	61.4	52.6
	미배치	46.3	
20	배치	61.1	52.2
	미배치	44.8	

인력	학교 수	좌석 수 평균
배치	3,274(41.6%)	62.0
미배치	4,596(58.4%)	46.4

t=-24.333***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0.001)

〈표 8〉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별 대출자료 수 평균

연도	인력	대출자료 수 평균	
18	배치	5,755.8	3,953.9
	미배치	2,871.5	
19	배치	5,349.8	3,709.1
	미배치	2,538.6	
20	배치	4,720.4	3,279.9
	미배치	2,073.4	

인력	학교 수	대출자료 수 평균
배치	3,274(41.6%)	5,240
미배치	4,596(58.4%)	2,511

t = -30.237***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0.001)

별로 학교도서관의 대출자료 수 평균은 2018년 3,953.9권에서 2019년 3,709.1권, 2020년 3,279.9권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의 대출자료 수 평균이 5,240권,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대출자료 수 평균은 2,511권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성취도 평가 E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과목 수를 비교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별로 성취도 평가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과

목 수는 2018년 1.8개 과목에서 2019년 1.8개 과목, 2020년 2.5개 과목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성취도평가 E등급인 학생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과목 수가 1.3개 과목, 미배치된 경우가 2.5개 과목으로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로 인한 학업성취도 차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기에 불가능하다. 다만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표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인력 배치 여부별 성취도평가 E등급 학생 비율 2분의 1 이상 과목 수 평균

연도	인력	성취도평가 E등급 학생 비율 2분의 1 이상 과목수 평균	
18	배치	0.8	1.8
	미배치	2.4	
19	배치	1.1	1.8
	미배치	2.4	
20	배치	1.9	2.5
	미배치	2.9	

인력	학교 수	성취도평가 E등급 학생 비율 2분의 1 이상 과목수 평균
배치	3,274(41.6%)	1.3
미배치	4,596(58.4%)	2.5

t = 14.073***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0.001)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두고 후속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에 따른 교당 학생 수를 비교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별로 교당 학생 수는 2018년 471.9명에서 2019년 445.1명, 2020년 436.7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교당 학생 수 평균이 585명, 미배치된 경우가 317명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학생 수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 수에 비해 2배에 가깝게 높고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SS의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성취도평가 최저등급 학생이 절반이 넘는 과목 수, 학생 수의 상호 모든 변인 간에 강력한 상관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은 상호 상관성을 검증할 뿐 변인 상호 간 영향 관계의 방향을 검증하지는 못하기에 보다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교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표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인력 배치 여부별 교당 학생 수

연도	인력	교당 학생 수	
18	배치	603.1	471.9
	미배치	340.6	
19	배치	576.6	445.1
	미배치	313.5	
20	배치	579.1	436.7
	미배치	294.2	

인력	학교 수	교당 학생 수
배치	3,274(41.6%)	585.4
미배치	4,596(58.4%)	317.0

t=-43.423***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0.001)

<표 11>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 통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학교도서관 진흥법 규정인력	장서수	자료구입비	좌석수	대출자료수	E등급2분의1 이상과목수	학생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인력	1	.370**	.347**	.268**	.313**	-.127**	.432**
장서수	.370**	1	.468**	.442**	.392**	-.124**	.549**
자료구입비	.347**	.468**	1	.324**	.392**	-.083**	.646**
좌석수	.268**	.442**	.324**	1	.254**	-.110**	.437**
대출자료수	.313**	.392**	.392**	.254**	1	-.158**	.484**
E등급2분의1 이상과목수	-.127**	-.124**	-.083**	-.110**	-.158**	1	-.154**
학생수	.432**	.549**	.646**	.437**	.484**	-.154**	1

많은 대규모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투입되는 자원인 인력뿐 아니라 예산, 장서, 좌석 수 모두가 월등하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입에 따른 산출 결과에 해당하는 대출자료 수도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법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특성을 분석해 낼 수 있다. 학생 수가 많고 투입되는 자원이 우수한 대규모 학교 위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단위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격차에 놓이기 쉬운 여건에 놓인 학교도서관에 서비스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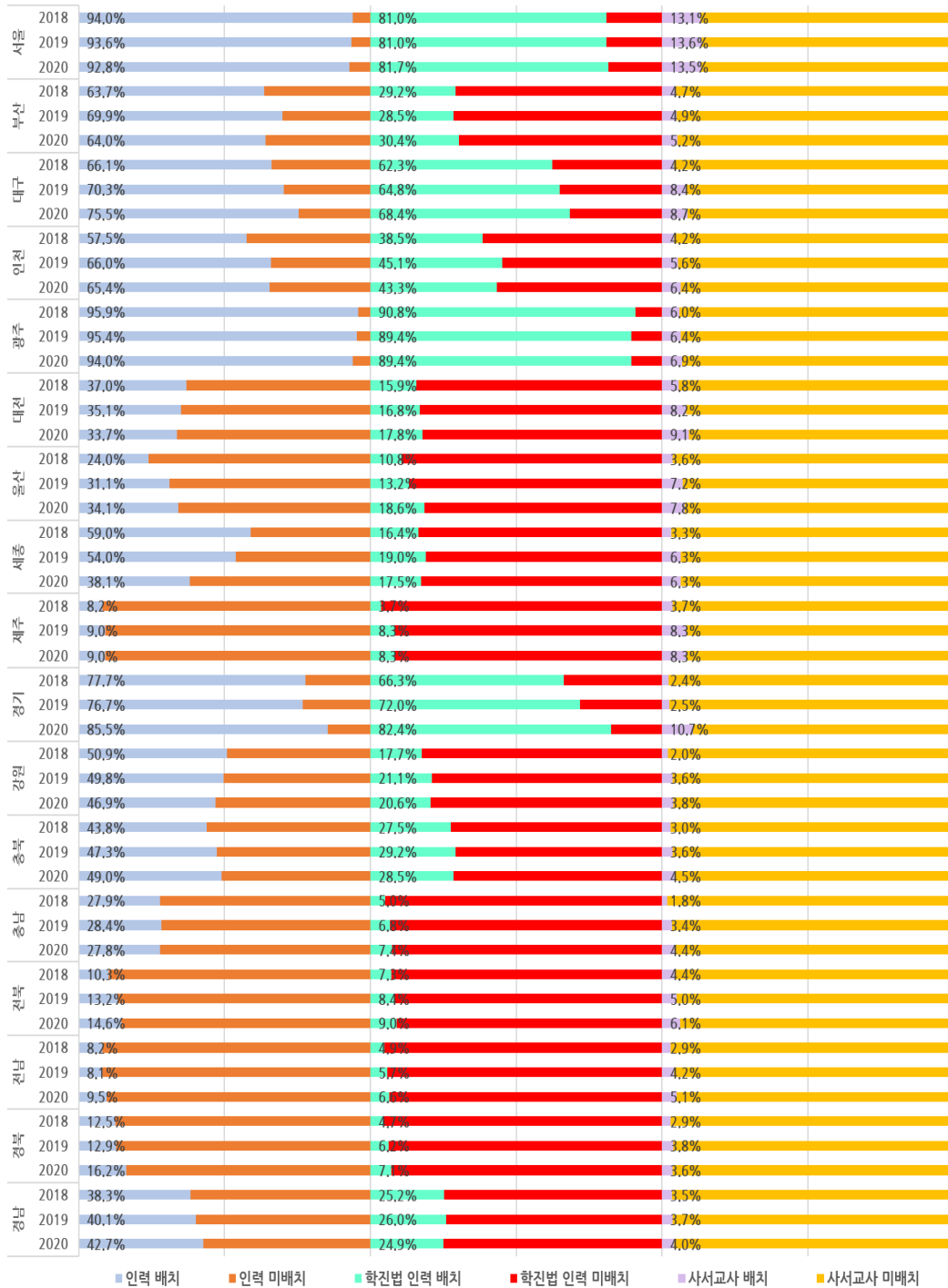
4.2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교도서관 규정 인력 배치 분석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높은 점을 분석한 결과에 기인하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도서관의 인력 배치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를 다시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현황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2020년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율과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는 89.6%와 83.3%, 광역시에는 62.7%와 45.8%, 도단위에는 29.1%와 16.0%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인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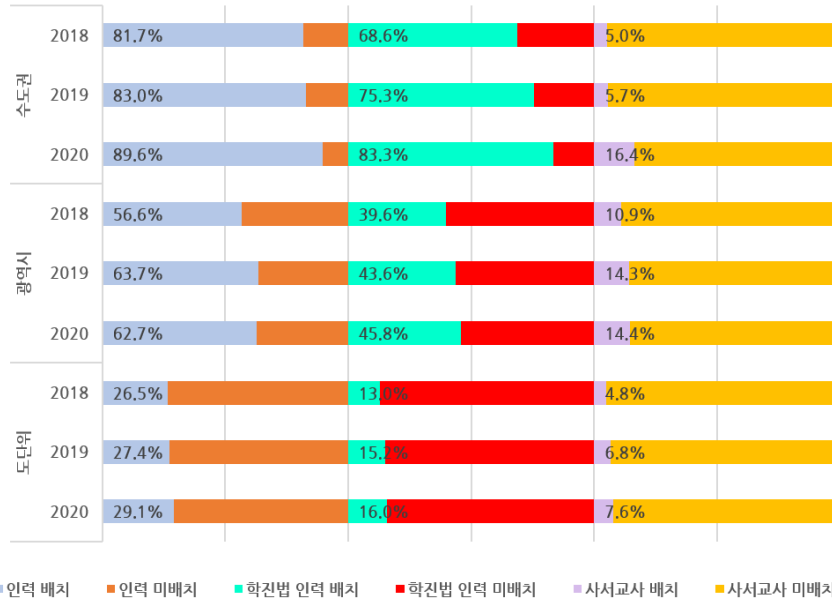
교사, 실기교사,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학교도서관 인력의 비율이 대부분으로 그 차이가 3.3% 수준인 데 비하여 광역시는 16.9%의 차이, 도단위의 경우 13.1%의 차이를 보여 지방의 경우 학교도서관 인력 중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 배치가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배치율도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6.4%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하여 광역시는 14.4%, 심지어 도단위는 7.6% 배치율에 그치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으로만 한정하여 지역 특성별 인력 배치율 추이를 다시 정리해 본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83.3%, 광역시에는 45.8%, 도단위에는 16.0%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도단위에서는 자격을 갖춘 학교도서관 인력의 비율이 5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 차이는 앞서 분석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별 학교도서관 자원에 해당하는 투입 통계 수치와 대출자료 수 같은 산출 통계 수치, 그리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높은 과목 수와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투입되는 자원도 열악하다. 이에 따라 규정 인력 배치는 대출자료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높은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지역별 학교도서관 인력/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사서교사 배치율 추이



〈그림 2〉 지역 특성별 학교도서관 인력/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사서교사 배치율 추이

〈표 12〉 지역 특성별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 비교

구분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전체 (100.0%)	카이 제곱
	배치	미배치		
18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39(68.6%)	292(31.4%)	931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78(39.6%)	271(60.4%)	449
	도단위 등(세종, 제주 포함)	158(13.0%)	1,060(87.0%)	1,218
	전체	975(37.5%)	1,623(62.5%)	2,598
19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12(75.3%)	233(24.7%)	945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43.6%)	256(56.4%)	454
	도단위 등(세종, 제주 포함)	188(15.2%)	1,050(84.8%)	1,238
	전체	1,098(41.6%)	1,539(58.4%)	2,637
2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99(83.3%)	160(16.7%)	959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6(45.8%)	244(54.2%)	450
	도단위 등(세종, 제주 포함)	196(16.0%)	1,030(84.0%)	1,226
	전체	1,201(45.6%)	1,434(54.4%)	2,635

지역 간 격차는 계층 간 격차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가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찰하고자 KOSIS의 지역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액의 통계를 분석한 결

과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수도권과 광역시, 도단위의 가계 당 순자산액은 44,760만원, 35,483만원, 25,593만원으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과 제주의 경우 광역시나 도단위에

〈표 13〉 지역별 가계 당 순자산액

지역	구분	금액(만원)	지역	구분	금액(만원)
서울 (수도권)	자산	67,839	경기 (수도권)	자산	48,437
	부채	11,077		부채	10,213
	순자산액	56,762		순자산액	38,225
부산 (광역시)	자산	36,542	강원 (도단위)	자산	34,307
	부채	6,712		부채	5,619
	순자산액	29,830		순자산액	28,689
대구 (광역시)	자산	40,826	충북 (도단위)	자산	30,193
	부채	7,894		부채	5,547
	순자산액	32,932		순자산액	24,646
인천 (수도권)	자산	40,605	충남 (도단위)	자산	30,466
	부채	8,498		부채	5,644
	순자산액	32,106		순자산액	24,822
광주 (광역시)	자산	35,554	전북 (도단위)	자산	29,732
	부채	6,035		부채	5,378
	순자산액	29,518		순자산액	24,354
대전 (광역시)	자산	36,864	전남 (도단위)	자산	31,512
	부채	6,562		부채	4,545
	순자산액	30,302		순자산액	26,967
울산 (광역시)	자산	39,420	경북 (도단위)	자산	30,457
	부채	6,776		부채	5,228
	순자산액	32,644		순자산액	25,228
세종	자산	59,671	경남 (도단위)	자산	31,511
	부채	10,793		부채	7,067
	순자산액	48,878		순자산액	24,444
제주	자산	52,147	전국	자산	44,543
	부채	7,869		부채	8,256
	순자산액	44,278		순자산액	36,287

지역 특성		순자산액 (만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44,760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세종, 제주 포함)	35,48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제외)	31,045
도단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세종, 제주 포함)	30,25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제외)	25,593
전체		36,287

각각 포함하여 수치를 분석해 보았다. 지역 간 격차는 불가피하게 계층 간 격차와도 연결됨을 검증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계 당 순자산액의 수준이 더 높고 제반 생활 여건이 더 좋은 지역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지역이 도단위 지역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도 더 높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격차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기반하여 교육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특성별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주는 함의는 지역 간 교육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와

연결되기에 지역별로 평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안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

5. 결론 및 제언

학교와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각각 뚜렷하게 지닌 공공재로의 상징성에 기반하여 학교도서관은 누구나 차별 없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될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자원조차 지역 간 교육격차에 비례하여 균질하지 못하게 배분된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의 배치와 학교도서관에 투입되는 자원, 서비스의 산출 결과를 EDSS의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법정 인력 배치 여부와 학교도서관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지역 간 균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법정 인력 배치에 따라 학교도서관 자원의 투입과 대출자료 수에 해당하는 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경우에 학교도서관의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가 미배치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강력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생수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분석했을 때 학교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통계 수치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과목수를 비교한 결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과목수는 적고, 학생 수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생 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 수가 미배치교 학생 수에 비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높았다. 이에 학생 수가 많고 학교에 투입되는 자원이 풍부한 대규모 학교 위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자원이 학교의 전반적 자원이 우수한 대규모 학교 중심으로 집중되며

학교도서관 서비스 역시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지역 특성별로 인력 배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도단위에 비해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도단위 학교, 소규모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다시 분석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교육격차에 놓이기 쉬운 도단위의 소규모 학교에 학교도서관 서비스 투입이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부의 기초학력보장계획이나 시도교육청 단위로 제정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도서관 자원의 적극 투입을 위한 정책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인 KOSIS를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 도단위의 가계 당 순자산액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순자산액이 조사되었고 광역시, 도단위는 점차적으로 낮은 순자산액이 조사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역 간 교육격차는 계층 간 격차와 직결된다. 지역 간 학교도서관 자원 투입이 불균형한 상황에 대해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함께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도단위나 작은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인력을 비롯한 투입자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학교와 도서관의 자원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와 도서관이라는 공공재가 지닌 상징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성의 요체인 학교도서관조차 그 자원의 투입과 서비스의 활성화 정도가 학교 여건,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균질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의무배치 규정이 조속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학력보

장 계획 및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등에 의거하여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속한 학교도서관에 제반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18).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 사례 연구: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과의 I·II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307-329. <http://doi.org/10.16981/kliss.49.3.201809.307>
- 강봉숙 (2018). 사서교사와 타 비교과 교사의 배치 비교를 통한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7-47. <http://doi.org/10.4275/KSLIS.2018.52.2.027>
- 교육부 (2022). 2023-2027 기초학력 보장계획. 출처: <https://youtu.be/KtX0xMJ3NWs>
- 김인희 (2010).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17(1), 129-175.
- 박일중, 유경중 (2009). 지역간 도서관 정보격차 및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의 3개 관종을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6(1), 57-80. <http://doi.org/10.3743/KOSIM.2009.26.1.057>
- 박혜경 (2017).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11, 93-132.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http://www.law.go.kr>
- 윤희운 (2022).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5-25. <http://doi.org/10.4275/KSLIS.2022.56.1.005>
- 조재인 (2020). 지니계수와 파레토 비율을 활용한 학술정보공유 기여에 대한 대학도서관 격차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237-255.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1.237>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출처: <http://kosis.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출처: <https://kess.kedi.re.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데이터서비스 EDSS. 출처: <http://edss.moe.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Jane (2020). A study on inequality analysis of academic information sharing in university

- libraries using Gini's coefficient and Pareto ratio.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237-255.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1.237>
- Kang, Bong-Suk (2018). A case study on school library educational services to reduce the information literacy gap due to the education ga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307-329. <http://doi.org/10.16981/kliss.49.3.201809.307>
- Kang, Bong-Suk (2018).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by a comparison between teacher librarian and other teachers not-teaching the subject mat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27-47.
<http://doi.org/10.4275/KSLIS.2018.52.2.027>
- Kim, Inhee (2010). Task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liminating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17(1), 129-175.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orea Edu Data Service System. Available:
<http://edss.moe.go.k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al Statistics. Available:
<https://kess.kedi.re.kr>
- Ministry of Education (2022). Briefing on planning to improve basic academic support 2023-2027. Available: <https://youtu.be/KtX0xMJ3NWs>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http://www.law.go.kr>
- Park, Hyekyong (2017).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Proposal for the Elimination of the Education Gap." *Journal of Legislative Evaluation*, 11, 93-132.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24>
- Park, Il-Jong & Yoo, Kyeong-Jong (2009). A study of the information disparity through libraries among four regional groups in Korea on the subject of three types of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57-80.
<http://doi.org/10.3743/KOSIM.2009.26.1.057>
- 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http://kosis.kr>
- Yoon, Hee-Yoon (2022).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5-25.
<http://doi.org/10.4275/KSLIS.2022.56.1.005>